



뉴프론티어동아리 운영규정

[제목개정 2022. 8. 1]

제정일	2019.11. 1
개정일	2022. 8. 1
개정차수	2차
담당부서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학생들의 전공(분야)과 타전공(분야)을 연계한 다학제 협력 학습활동을 통해 창의적 개발능력과 졸업 후 현장 실무 적응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하기 위하여 소그룹 형태의 융합동아리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 1)
- 제 2조 (정의) ‘뉴프론티어동아리’ 는 본교 학생들이 2개 이상의 분야를 융합한 주제를 활동주제로 가지고 창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아이디어, 신상품, 신기술개발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하여 신제품 개발참여, 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통해 취·창업을 위한 자기설계 직무능력함양을 도모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개정 2020.10. 1, 2022. 8. 1)
- 제 3조 (구성) 본교 뉴프론티어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뉴프론티어동아리는 본교 재학생, 신입생, 휴학생 중 2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 1, 2022. 8. 1)
 2. 뉴프론티어동아리는 2가지 이상의 분야가 융합한 주제로 활동해야 한다. (개정 2020.10. 1, 2022. 8. 1)
 3. 뉴프론티어동아리의 지도교수는 동아리별 1인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4. DIY@Maker.Space 프로그램의 창작 지원을 받는 본교 재학생, 신입생, 휴학생은 1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 1, 2022. 8. 1)
 5. 회원의 자격 상실은 학적상실(자퇴, 제적, 유예, 졸업 등)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10. 1)
- 제 4조 (등록) 뉴프론티어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 1, 2022. 8. 1)
1. 뉴프론티어동아리 지원 신청서 1부 (개정 2022. 8.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뉴프론티어동아리 활동계획서 1부 (개정 2022. 8. 1)
 4. 뉴프론티어동아리 서약서 1부 (개정 2022. 8. 1)
- 제 5조 (승인) 뉴프론티어동아리의 승인은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에 등록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 1, 2022. 8. 1)
- 제 6조 (등록 취소 또는 지원불허) 등록된 뉴프론티어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심의를 거쳐 총장이 등록을 취소 또는 지원을 불허 할 수 있다. (개정 2020.10. 1, 2022. 8. 1)
1.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2. 학칙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1년 이상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4. 동아리 활동내용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5.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 중인 경우
6. 활동보고서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7.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 7조 (동아리 지원범위) 뉴프론티어동아리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들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창의 메이커스페이스 내 작업 스튜디오, 회의실, 세미나실을 무료 대관
2. 뉴프론티어동아리 활동을 위해 활동목적성 경비, 기자재 물품지원 (개정 2022. 8. 1)
3. 활동운영비는 뉴프론티어동아리 운영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 활동실적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개정 2022. 8. 1)
4. 기타 동아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조 (활동참여) 뉴프론티어동아리는 뉴프론티어동아리 관련 대학 전체 행사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제 9조 (활동평가 및 결과보고) 뉴프론티어동아리 지도교수 및 동아리 대표는 지정된 기간에 뉴프론티어동아리 활동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활동운영비 집행 정산서를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로 제출하고 활동실적 결과 심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 1, 2022. 8. 1)

제10조 (지도교수) ① 뉴프론티어동아리의 지도교수는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으로서 1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8. 1)

② 각 동아리에 위촉된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의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동아리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뉴프론티어동아리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8. 1)

제11조 (변경통보의무) 뉴프론티어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 1, 2022. 8. 1)

1.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뉴프론티어동아리 대표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8. 1)
3. 기타 주요한 뉴프론티어동아리 운영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8. 1)

제12조 (평가위원회) ① 뉴프론티어동아리 활동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0.10. 1)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0. 1)

④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평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